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,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며, 위원 수의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함(안 제5조의2).

II. 검토의견

□ 부칙 경과조치 삭제(안 부칙 제2조)

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¹⁾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.

-
- 1) 「통계법」 제5조의2(국가통계위원회) ①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유사·중복 통계의 조정,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5.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
6.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
7.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.
④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그러나 제5조의2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, 심의·의결 사항 및 그 구성에 대해서만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, 위원의 자격·임기 등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²⁾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따라서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경과조치도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법령 간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므로, 이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아,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 제2조(국가통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	부 칙 <삭 제>

- 2) 「국가통계위원회 규정」(대통령령) 제3조(구성) ① 「통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.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· 교육부장관 · 행정안전부장관 · 문화체육관광부장관 · 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· 보건복지부장관 ·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· 고용노동부장관 · 성평등가족부장관 ·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
 2. 한국은행총재,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
 3. 통계 또는 관련 분야(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·사회·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 - 나.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 - 다.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 - 라.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4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된다.
- 제4조(위촉위원의 임기)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<u>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의2의 개</u> <u>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u>	
--	--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